

겸임교원 규정

제정 1993. 3. 10. 개정 2000. 9. 1.
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3. 1.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겸임교원의 자격,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급) 모든 겸임교원의 직급은 겸임전임강사, 겸임조교수, 겸임부교수로 임용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3조(자격) ① 겸임교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,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교수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담당교과목과 유사한 직무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3.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있는 자
4. 임용기간동안 계속하여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,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겸임교원이 제1항 제1호의 현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, 현직을 상실한 날로부터 겸임교원의 직도 상실한다.

제4조 삭제 <2013.7.1.>

제5조(임용절차) ① 교학처장은 매학기 종료일(2월말, 8월말)4개월 전에 각 학부(학과)장으로부터 겸임교원 수급현황을 제출받아 수합하고, 학부(과)조정 및 개편, 학생현황, 수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조정을 거쳐 최종 수급 자료를 작성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② 겸임교원 임용은 공개채용 및 학부(과)장이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 및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본직 기관장의 동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제6조(임용기간)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재임용 할 수 있다.

제7조(구비서류) 겸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임용) ① 교학처장은 임용기간 만료 대상 겸임교원을 각 학부(학과)장에게 통보하고, 학부(학과)장이 겸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임용기간만료 2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1. 겸임교원 재임용평가서 1부 [별표 2]
2. 겸임교원 활용계획서 1부 [별표 3]

3. 임용 동의서 1부 [별표 4] <개정 2014.3.1.>

4. 재직증명서 1부

② 교학처장은 제출된 서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 제청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제9조(복무) ① 겸임교원은 담당강의에 충실하여야 하고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과 취업지도 및 산학협동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겸임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총장의 지휘, 감독을 받는다.

제10조(처우) 겸임교원에 대한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겸임교원 활용계획서

인적사항	성명(한자)	()		주민등록번호	-	
	본직기관명			직 위		
학 위	출신학교		입 학 년 월	졸 업 년 월	전 공	학 위
	대 학					
	대 학 원	석사				
		박사				
주요경력						
활 용 계 획						
담당업무	강의	이론과목명			주당담당시간	
		실습과목명			주당담당시간	
	기타					
활용의 필요성(구체적으로 작성 : 별첨작성도 가함)						

위와 같이 겸임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계 열 (학 과) 장 (서명)
 학 부 장 (서명)

[별표 4]

임 용 동 의 서

성 명		생년월일			
소속기관		부 서		직위	
담당업무		겸임교원 임용기간	20 . .	- 20 . .	

위 사람을 대경대학교의 (학부/학과)

산업체 겸임교원으로 임용됨을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 경 대 학 교 총 장 귀하

산업체(기관)명 :

산업체(기관)장 : (직인)